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15 선고 2022가단11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

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정하경

[별지]

청 구 원 인

- 채권자는 2021년 5월말경 채권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신청의 **D** 을 만났는데, 그때 신청의 **D** 는 채무자가 자신의 자녀를 **E** 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지만 거절을 하였다고 하면서, 채권자도 취업준비중인 아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채무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여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습니 다.
- 채권자는 신청의 **D** 의 소개로 2021. 6. 1.경 살고있는 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사돈이 **E** 에 근무하고 있는 바, 사돈에게 부탁하여 채권자의 아들 신청의 **F** 을 **E** 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43,500,000원이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돈을 입금해주면 늦어도 2021년 8월말까지는 취직시켜 주겠다고 너무나도 자신있게 말을 하였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취 업준비 중에 있는 자식을 둔 엄마의 심정에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권자는 그날 바로 채권자의 계좌에서 33,500,000원, 채권자의 남편인 신청의 **F** 의 계좌에서 10,000,000원 등 채무자가 요구한 합계 43,500,000원을 채무자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 다음날 채무자로부터 **E** 숙소가 하나 나왔는데, 숙소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일단 방을 수리해야할 상황이니 리모델링비용으로 2,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1. 6. 2.채무자에게 2,000,000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2021. 6. 15. 취업날자를 앞당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런저런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10,000,000원이 필요하니 사돈에게 보내주어야 한 다고 하면서 취업이 되면이 위 돈은 채권자에게 반환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채권자에게는 10,000,000원이 없었기에 채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일 단 3,000,000원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였더니 채무자가 그날 나머지 7,000,000원

은 자신이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2021. 6. 15. 채무자에게 3,000,000원을 보내주었습니다.

5. 그러던 2021. 6. 27.경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의 아들 신청의 F의 취적이 확정되어 2021. 9. 7.부터 출근하면 된다는 연락을 해오면서, 사돈이 일을 추진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1,7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서 채권자는 그날 1,700,000원을 채무자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6. 채권자는 채무자가 얘기한 아들 소의 F의 출근날자인 2021. 9. 7.이 며칠남지 않은 2021년 8월말경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여 2021. 9. 6. 출근을 하면 되는지 확인전화를 하였더니 채무자는 시간이 며칠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최종확정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2021. 9. 11.경 채무자로부터 사돈이 뒷사람과 만나 얘기가 잡되었다고 하면서 추가로 4,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채권자로서는 얘기가 다되어 4,000,000원만 입금해주면 채무자의 말을 믿고 2021. 9. 10.에 아들 신청의 F 계좌에서 2,000,000원, 2021. 9. 11.에 300,000원, 2021. 9. 14.에 1,7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채무자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총 54,200,000원(33,5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1,700,000원 + 2,000,000원 + 300,000원 + 1,700,000원 = 54,200,000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7.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과 달리 출근날자가 미루어 졌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2021년 10월 초순경 채무자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일로 종결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송금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채무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 그런데 채무자는 2021. 11. 24.에 5,000,000원, 2021. 11. 26.에 5,000,000원, 2021. 12. 14.에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주고 나머지 39,200,000원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